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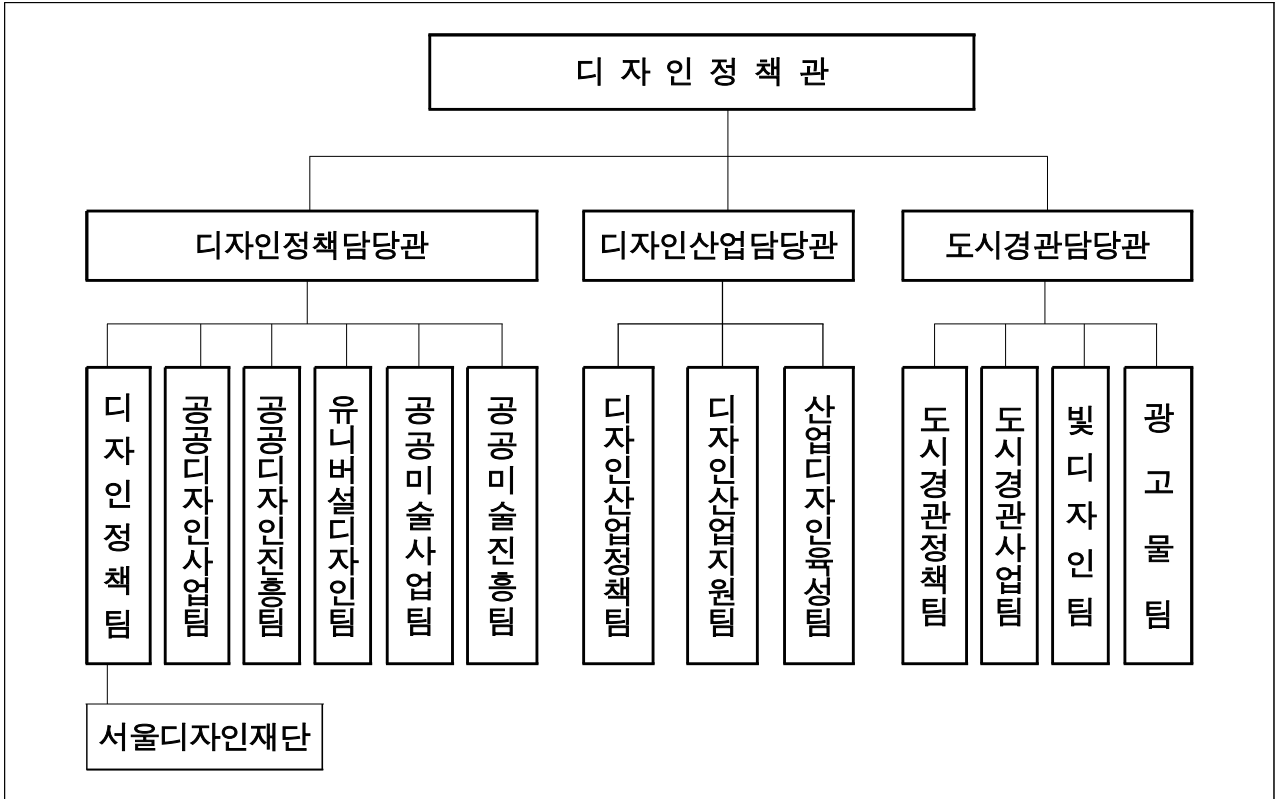
현안업무보고

2023. 6.

디자인정책관

I. 일반 현황

□ 조 직 : 3과 13개팀 / 1출연기관('23. 5월말 기준)



□ 인 력 : 정원 67명 / 현원 67명

('23. 5월말 기준 / 단위 : 명)

구 분	계	개방형·일반직					관리 운영	임기제
		3급	4급	5급	6급	7급이하		
계	67/67	1/1	3/3	14/14	18/19	19/18	1/1	11/11
디자인정책담당관 (국장 포함)	32/32	1/1	1/1	5/5	8/6	7/9	1/1	9/9
디자인산업담당관	12/12		1/1	4/4	3/3	3/3		1/1
도시경관담당관	23/23		1/1	5/5	7/10	9/6		1/1

□ 부서별 주요업무

부 서	주 요 업 무
디자인정책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디자인 정책 총괄·기획·업무보고, 서울디자인재단 지도·감독, DDP 관리위탁 공공디자인사업 및 진흥, UD를 위한 사업 추진, 성과확산, 제도 개선, 위원회 운영 공공미술사업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, 제도개선, 위원회 운영
디자인산업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, 사업 발굴 및 기획 디자인산업 관련 행사, 디자인기업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·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 발굴·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도시경관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시행,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좋은빛 환경 조성 및 빛 활용 축제, 빛 미디어 사업 시행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,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및 특정구역 지정

□ 예 산

○ 세입·세출별 예산

(’23.5월말 기준 / 단위:백만원)

구 분	2023년		2022년(B) (최종예산)	증 감		
	본예산(A)	예산현액		증감(A-B)	증감률	
세 입	계	498	498	769	△271	△35.2%
	일 반 회 계	498	498	769	△271	△35.2%
	재 산 임 대 수 입	139	139	137	2	1.2%
	이 자 수 입	20	20	31	△11	△35.9%
	보 조 금 반 환 수 입	339	339	593	△254	△42.9%
	지 난 년 도 수 입	1	1	8	△7	△87.5%
세 출	계	64,700	66,141	45,798	18,902	41.3%
	일 반 회 계	64,400	65,841	45,563	18,837	41.3%
	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300	300	235	65	27.7%

○ 부서별 세출예산

(’23. 5월말 기준 / 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2023년		2022년(B) (최종예산)	증감액 (A-B)	증감률
	본예산(A)	예산현액			
계	64,700	66,141	45,798	18,902	41.3%
디자인정책담당관	43,300	43,985	33,230	10,070	30.3%
디자인산업담당관	4,078	4,078	228	3,850	1,688.6%
도시경관담당관	17,322	18,078	12,341	4,981	40.4%

※ 예산현액 : 본예산 + 이월·추경예산 / 최종예산 : 본예산 + 추경예산(이월예산 미포함)

II. 정책비전 및 목표

비전

“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”

추진목표

시민이 일상속에서 체감하는
디자인 감성 도시

디자인계의 성장과 공헌이 활발한
디자인 산업 도시

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
디자인 경관 도시

핵심과제

**서울형 경관과
즐거움을 창조하는
공감 디자인**

- ① 자연·도시·사람을 아우르는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
- ②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한 빛 디자인 추진
- ③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
- ④ 세계적인 「미디어아트 서울」 추진
- ⑤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편 디자인 추진

**세대를 통합하고
세계시민이 즐기는
포용·공헌 디자인**

- ①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
- ② 고품격 도시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「서울은 미술관 2.0」 추진
- ③ 국내외 디자인협력·디자인교류·디자인외교 추진

**안심일상과
디자인생태계를 위한
회복·지속가능디자인**

- ① 안전한 산업현장과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디자인 추진
- ②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
- ③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산업 육성
- ④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
- ⑤ 빚공해 없는 편안한 빛환경 조성

Ⅲ. 현안업무 보고

1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편 디자인 추진

2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

3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

4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 분임관리관 추진현황

1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편 디자인 추진

디자인정책담당관 : 이창현 ☎2133-2700 공공디자인진흥팀장 : 권은선 ☎2191 담당 : 김기선 ☎2195

시민 힐링 시설물 개발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펀디자인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일상의 즐거움과 흥미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일상 속의 새로운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는 시민 힐링 시설물 개발 및 확산
 - 사업기간 : '23. 2 ~ 11월, 사업예산('23년) : 600백만원
- 도심 유휴공간에 펀(FUN)디자인 적용하여 시민 휴식공간 조성
 - 사업기간 : '22. 11월 ~ '23. 12월, 사업예산('23년) : 687백만원

□ 추진실적('23.5월말 기준)

- 자연스런 거리두기가 가능한 물방울 형태의 Soul Drops 벤치 확산 설치
 - 3대 디자인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제품부분 본상 수상('23.5.15.)
 - 열린송현녹지광장 설치('23.5.10.), 여의도 한강공원 설치예정('23.6월말)



【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】



【 열린송현녹지광장 시민 이용 모습 】



-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에 수변복합문화공간 기본설계 완료('22.12월)
 - 어둡고 폐쇄적인 복개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의 여가수요를 반영한 감성 복합 문화공간 조성('23.7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)

□ 향후일정

- (시민 힐링 시설물 확산) 기 개발한 펀디자인 시설물 확산 설치('23.6~7월)
- (시민 힐링 시설물 개발) 신규 디자인 개발('23.5~9월), 샘플 및 매뉴얼 제작('23.10~11월)
- (시민 휴식공간 조성) 실시설계 준공('23.7월), 시공(동대문구, '23.8월~'24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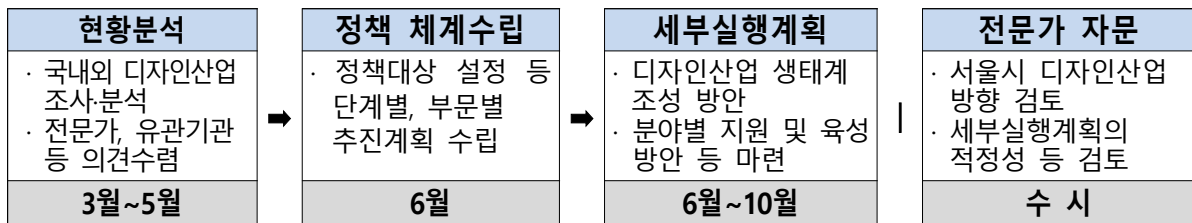
2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

디자인산업담당관 : 권명희 ☎2133-9324 디자인산업정책팀장 : 이주영 ☎9325 담당 : 정윤희 ☎9326

서울시 디자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으로
서울시 디자인산업의 기반 조성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
- 용역기간 : '23. 2. 28. ~ 12. 31.
- 추진일정



- 사업예산('23년) : 250백만원

□ 추진실적('23.5월말 기준)

- 서울디자인산업 활성화 모델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외 현황 조사
 - (해외)런던, 뮌헨, 파리, 밀라노, 헬싱키, 코펜하겐 등 13개 도시(국가)
 - (국내)서울, 경기, 송도, 춘천, 대전, 광주, 대구, 부산 등 12개 도시
 - ⇒ 디자인 관련 판로개척, 창업·육성, 교육, 지원, 홍보 등 벤치마킹 포인트 도출
- 현장밀착형 지원사업 도출을 위한 전문가, 산업종사자 의견 수렴
 - 한국디자인진흥원, 서울경제진흥원, 서울연구원, 서울디자인재단 4개 기관
 - ⇒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양자의 니즈 충족 및 연계 필요
 - 디자인 컨설팅, 디자인 선도기업 등 전문기업 12개사
 - ⇒ 디자인 융합을 통한 디자인과 산업 영역의 동반 확장



□ 향후일정

- 사업 방향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: '23. 7월
- 서울시 디자인산업 5개년('24~'28) 기본계획 수립 : '23. 12월

3

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

도시경관담당관 : 김대권 ☎2133-1920 도시경관정책팀장 : 함창모 ☎1921 담당 : 박세창 ☎1926

‘디자인 서울 2.0’ 정책을 선도할 실행력과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을 수립 ·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TOP 5 우수 경관도시 구현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경관법 제15조(경관계획의 정비)
- 용역기간 : '23. 3. 27. ~ '24. 6. 28.
- 용역내용 : ‘매력 디자인 도시서울’ 을 지향 목표로 경관형성 중점의 계획추진
 - 경관현황조사,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, 중점경관관리계획, 실행계획 등 수립
 - ※ 기존의 도시계획적 관리적 측면에서 디자인 관점을 반영한 경관형성 측면 강화 추진
- 사업예산('23년) : 285백만원

□ 추진실적('23.5월말 기준)

- 경관형성 중점의 사업방침 수립('23.2.8.)
 - 경관, 디자인, 야간경관, 색채 등 전문가 자문(2회 9명)을 통해 추진방향 설정
- 경관디자인 계획수립 역량을 갖춘 용역사 선정 및 계약('23.3.27.)
- 도시계획정책자문단(위원장 총괄건축가) 착수보고 이행('23.4.25.)
 - 시정방향 및 도시계획 정책에 부합하는 용역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분야별 (경관, 디자인, 건축 등) 자문을 통해 수립방향 적정성 검증보완
- 경관 현황 조사 및 경관 기본구상 추진('23.5.~7.)

□ 향후일정

- 경관계획 수립 용역 추진 : '23. 6 ~ 12월
- 공청회, 시의회 의견청취, 유관기관(환경부 등) 협의,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,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: '24. 1 ~ 6월

4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 분임관리관 추진현황

디자인정책담당관 : 이창현 ☎2133-2700 디자인정책팀장 : 김남수 ☎2702 담당 : 김미화 ☎2708

DDP 공간 內 조성 예정인 첨단기술 전시공간에 대한 분임관리관 지정 (디자인정책관 → 경제정책실) 검토 및 사용료 면제 방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

□ [당초]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(안) : 분임관리관 지정

- 경제정책실로 분임관리관 지정 후 사업추진(행1부시장 방침, '23.4.10.)
 - SBA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또는 대행을 통해 사업추진
 - 라이프스타일 전시 플랫폼 조성, 대·중소기업 협업 첨단 기술 전시 등

공간	콘텐츠	추진주체	이관시기
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	첨단 테크 퓨처리움	경제정책실(SBA)	'23.4.~
디자인랩 1~2층	스마트쇼룸	경제정책실(SBA)	'23.9.1.
뮤지엄 전시2관	스마트서울 기업관	경제정책실(SBA)	'24.1.1.
뮤지엄 둘레길	라이프스타일 체험관	경제정책실(SBA)	'24.1.1.

< 추진경과 >

- '23. 4.10. : '첨단 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' 수립(행1부시장 방침, '23.4.10)
- '23. 4.19. : 디자인정책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보고
- '23. 4.28. : 제318회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DDP 현장 방문
- '23. 5. 4. : 행정1부시장-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면담
- '23. 5.22. : 경제정책실장-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면담
- '23. 6. 7. : 디자인정책관-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면담

□ [변경]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(안) : 분임관리관 지정 보류

○ 사용허가 방식(임대)으로 사업추진, 사용료 면제 필요

- 사용허가 방식(임대) 사업추진을 위한 금년 사용료 예산 미확보
- 사용료가 확보되더라도 市 내부적 수입(디자인정책관) 및 지출(경제정책실) 발생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등 경제적·행정적 비효율 초래

(단위 : ㎡, 백만원)

공 간 명	면 적	연간 사용료 10/1,000(요일)
계	9,584	1,404
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	707	103
디자인랩 1~2층	5,251	770
뮤지엄 전시2관	1,462	215
뮤지엄 돌레길	2,164	316

※ 공물법 제14조(사용료) ①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

□ 사용료 면제를 위한 ‘시의회 동의’ 요청

○ 면제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
◆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~3.(생략)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◆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2. (생략)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○ 면제절차

순서	업 무	주 체
1	사용료 면제 방침 수립	재산관리관(디자인정책관)
2	시의회 동의	소관 상임위
3	공유재산심의회 의결	재산관리과